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65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김성원·고동진·김선교

이종배 • 정동만 • 김정재

박충권 · 임이자 · 박성훈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상어양식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는 관상어의 수입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수품종을 양식·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설비를 갖 추는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관상어양식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임.

하지만,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관상어양식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관상어 양식생산의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관상어산업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

법률 제 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할"을 "지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증이"를 "지정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인증서를"을 "지정서를"로,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을 "지정사업자는 지정표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사업자가"를 "지정사업자가"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사업자가"로 "지정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사업자가"를 "지정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사업자가"를 "지정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사업자가"를 "지정사업자가"로, "인증기준을"을 "지정기준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인증사업자에"를 "지정사업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인증표시의"를 "지정표시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인증의"를 "지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사업자가"를 "지정사업자가"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중 "인증을"을 각각 "지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기준에"를 "지정

기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사업자는"을 "지정사업자는"으로, "인증이"를 "지정이"로, "인증서를"을 "지정서를"로, "인증표시의"를 "지정표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조(우수사업자 <u>인증</u>) ① 해양 | 제16조(우수사업자 <u>지정</u>) ① |
| 수산부장관은 건강하고 품질이 | |
|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생산하 | |
| 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 | |
| 자로 <u>인증할</u> 수 있다. | <u>지정할</u> |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 2 |
| <u>인증을</u> 받으려는 관상어양식업 | - <u>지정을</u> |
|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 |
|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
|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 |
|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u>인증</u> | |
| 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 | <u> 지정이</u> |
| 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 |
| |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 3 |
| 따라 우수사업자로 <u>인증을</u> 받 | <u>지정을</u> |
| 은 관상어양식업자(이하 " <u>인증</u> | <u>지정</u> |
| <u>사업자</u> "라 한다)에게 해양수산 | 사업자 |
|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 | |
| <u>증서를</u> 발급할 수 있으며 <u>인증</u> | <u>지정서를지</u> |
| 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 | 정사업자는 지정표시를 |
| 다. | , |
| ④ <u>인증사업자가</u> 아닌 관상어 | ④ <u>지정사업자가</u> |

| 양 | 식업자는 | 인증표 | [시 | 또는 | 이 |
|---|------|-----|----|------------|---|
| 와 | 유사한 | 표시를 | 하여 | 취서는 | 아 |
| 니 | 된다. | | | | |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u>인증을</u> 신청하는 관상어 양식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인증에</u>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u>인증사업</u> <u>자가</u> 제8항에 따른 <u>인증기준을</u>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u>인증사업</u> <u>자에</u>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9 조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 기준·절차·방법 및 인 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의 취소 등) ① 해양 가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 <u>지정표시</u> |
|-------------------------------|
| |
| <u> </u> |
| <u>지정을</u> |
| |
| <u>지정에</u> |
| |
| · ⑥ <u>지정사업</u> |
| <u> 자가지정기준을</u> |
| |
| ⑦지정사업 |
| <i>()</i> <u>시청사임</u> 자에 |
| |
| |
| 8 |
| - <u>지정지정</u> |
| 표시의 |
| · 제17조(<u>지정의</u> 취소 등) ① |
| <u>지정사업자가</u> |
| |
| <u>지정을</u> |
| |

당하는 경우에는 그 <u>인증을</u>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6조제8항에 따른 <u>인증기</u><u>준에</u>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경우
- 3. (생략)
- ② <u>인증사업자는</u> 제1항에 따라 <u>인증이</u> 취소된 경우에는 제16 조제3항에 따른 <u>인증서를</u> 반납 하고 같은 항에 따른 <u>인증표시</u> 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u>인증을</u> 취소하려면 청문 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 1. (생략)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 3.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u>인</u> 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

| <u>지정을</u> |
|-------------------|
| |
| 1 |
| <u>지정을</u> |
| 2 <u>지정기</u> |
| <u> 준에</u> |
| |
| 3. (현행과 같음) |
| ② <u>지정사업자는</u> |
| - <u>지정이</u> |
| 지정서를 |
| 지정표시 |
| 의 |
| ③ |
| <u>지정을</u> |
| <u>.</u> |
| 제24조(과태료) ① |
| |
| |
| <u>.</u> |
| 1. (현행과 같음) |
| 2 |
| |
| 지정을 |
| 3 <u>\times_1</u> |
| 전 표시 |

| 시를 한 자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